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검토보고서-참조34)

 성남시의회 Seongnam City Council	성남시의회
	제284회(임시회)

2023.07.17.(월)
문화복지체육위원회실

조례(안) 등 검토보고서

《검토사항》

- 조례안 8건
(제정 2건, 일부개정 6건)
- 민간위탁 동의안 7건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전문위원 염대석)

성남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경위

- 제안자: 김종환 의원 등 13명
- 의안번호: 제5190호

2. 제안이유

- 코로나19 방역 해제 이후 신체활동이 위축된 생활체육 인구 및 고령인구의 체육시설 이용 수요가 급격히 증가됨에 따라 더 많은 시민들이 경제적인 부담 없이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저변확대를 위한 조례를 재정비하여 성남시민 건강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안 제4조제2호)
 - 성남시 체육회 종목단체 3개구 지회(구기종목) 추가
- 사용료의 감면 (안 제13조제1항 바목, 아목)
 - 성남시 체육회 종목단체 3개구 지회(구기종목) 추가
 - 회장기(지회장기) 대회(연 5회)로 개정

4. 참고자료

- 관계법령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
 - 「생활체육진흥법」 제10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14조, 제33조의2, 제34조
 - 기 타
 - 입법예고(2023. 06. 20. ~ 06. 26.): 부서 부동의 의견 제출
- ※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성남시 자치법규 입법 사무에 관한 조례 제8조

5. 집행기관 의견: 부동의

☞ 성남시 체육진흥과 의견: 개정 부동의

▶ 개정안 제4조제2호 및 제13조제1항제1호는 기존 조례 조항 유지

▶ 부동의 이유

1. 우선사용·무상사용 권한 부여가 일반적 주체 범위가 아닌 특정단체 (구기종목 3개구 지회)에 집중되어 **특혜 소지**
2. 특정단체 (구기종목 3개구 지회)의 전용구장 및 일반체육관 우선 전용 대관 확대 시 일반 시민의 **공정한 시설 이용 권한 침해 우려 및 시민 불편 발생** 우려

【체육단체 체계 및 현황】

· 성남시 체육회	·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 종목단체 47개 종목	· 가맹단체 16개 종목
· 4개 종목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3개구 지회	· 3개구 지회 없음

※3개구 지회는 개별 종목단체 규정에 따른 산하 단체임

6. 검토 의견

가. 조례 개정의 취지 및 이유

- 시민들이 경제적 큰 부담 없이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 이용의 우선순위 및 체육시설 이용료의 감면 대상을 정비하는 등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현 조례를 재정비하려는 안으로 개정 취지 및 필요성이 인정됨.

나.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

- 개정안 제4조제2호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성남시 체육회 종목단체 3개구 지회(구기종목)” 호를 추가함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1. (생략) 2. 체육진흥을 위하여 성남시 <u>체육회</u> , 성남시 장애인체육회에서 주최·주관하는 각종 경기 대회·행사 3. ~ 7. (생략)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1. (현행과 같음) 2. ----- 체육회, <u>성남시 체육회 종목단체 3개구 지회(구기종목)</u> , ----- 3. ~ 7. (현행과 같음)

- 시민은 누구나 공정하고 제한 없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공 목적¹⁾인 경우 한하여 일반시민보다 제한적으로 우선하여 대관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경기도 타 시·군의 경우도 일반시민보다 우선하는 주체는 공공적 성격의 주체(시, 체육회, 학교) 또는 배려 대상(장애인)으로 한정하고 있음.

【경기도내 시군별 운영사례】

▶ 1.시 2.체육회 3.학교 4.일반인: 11개 시 - 성남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군포시, 동두천시, 수원시, 안양시, 의왕시, 오산시, 하남시
▶ 1.시 2.체육회 3.학교 4.장애인 5.일반인: 8개 시 - 김포시, 남양주시, 안산시, 양주시, 파주시, 평택시, 포천시, 화성시
▶ 1.시 2.체육회 3.일반인: 용인시
▶ 1.시 2.체육회 3.장애인 4.일반인: 부천시
▶ 1.시 2.체육회 3.운동부 4.스포츠클럽 5.일반인: 의정부시 ※ 19. 5. 21. 개정(의원발의)으로 클럽우선권 부여
▶ 1.시 2.체육회 3.학교 4.문화행사 5.일반인: 광명시
▶ 1.시 2.체육회 3.학교 4.장애인 5.엘리트선수 6.일반인: 광주시
▶ 1.시 2.체육회 3.학교 4.노인 5.장애인 6.일반인: 안성시

- 그러나 개정안의 경우 개별 종목단체 규정에 따른 산하 단체인 ‘성남시 체육회 종목단체 3개구 지회’의 명으로 구기 종목²⁾에 한정하여 공공 체육시설 이용 기준을 일반 시민 보다 우선 사용의 권한 부여 개정안은 공정 기준에 특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며 이에 대한 일반 시민 불편 및 원성이 제기될 것으로 사료됨.

【체육단체 체계 및 현황】

성남시 체육회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 종목단체 47개 종목 중 게이트볼, 배드민턴, 탁구, 테니스 4개 종목만 3개구 지회 운영	· 가맹단체 16개 종목

※3개구 지회는 개별 종목단체 규정에 따른 산하 단체임

1) 공공 목적: ① 국가·도·시 주관 행사 ② 체육회·장애인체육회 주관 행사 ③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2) 구기 종목: 공을 가지고 하는 운동 (네트형: 테니스, 배드민턴, 탁구 등, 베이스볼형: 야구, 소프트볼 등, 골형: 축구, 농구 등)

- 참고적으로 최근 지자체에서 생활체육 종목인 테니스·축구·배드민턴 등 공공체육시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의해 독점적 사용한다는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자체에 권고한 바 있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주관으로 국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운영 매뉴얼 제작 및 실태 점검에 있음.

○ 개정안 제13조제1항제1호 사용료의 전액 전면 바목과 아목, 자목 중에 “성남시 체육회 종목단체 3개구 지회(구기 종목)”를 추가하였고, 자목에 “회장기 대회(연 1회)”를 “회장기(지회장기) 대회(연 5회)”로 개정하는 내용임.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 1. 전액 감면 가. ~ 마. (생 략) 바. 성남시 체육회 <u>종목단체</u> ,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단체의 시장(구청장), 시의회 의장, <u>회장기 대회(연 1회)</u> 사. (생 략) 아. 성남시 체육회 <u>종목단체</u> 및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에서 주최하는 전국 또는 도 단위 대회 자. 성남시 체육회 <u>종목단체</u> 및 성남시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된 65세 이상 노인 단체 경기·행사	제13조(사용료의 감면) ① ----- 1. 전액 감면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u>종목단체, 성남시 체육회 종목단체 3개구 지회(구기종목)</u> , ----- <u>회장기(지회장기) 대회(연 5회)</u> 사. (현행과 같음) 아. ----- <u>종목단체, 성남시 체육회 종목단체 3개구 지회(구기종목)</u> ----- 자. ----- <u>종목단체, 성남시 체육회 종목단체 3개구 지회(구기종목)</u> -----

- 체육시설 이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안 제4조제2호 중 성남시 체육회 종목단체 3개구 지회(구기 종목)가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성남시 체육회 종목단체 3개구 지회(구기 종목)에 대한 우선 사용 및 무상 사용 권한 부여로 개정될 시 시설 배분 부족과 사용료 전액 감면 등으로 체육시설 이용 일반 시민들과 지속적인 다툼이 이어질 것으로 사료됨.

다. 종합검토 의견

- 해당 조례는 성남시가 설치한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시민은 누구나 공정하고 제한 없이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조례에서 정한 공공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일반시민 보다 제한적으로 우선하여 대관하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면에서 개정조례안의 경우 우선 사용 권한 및 무상 사용 권한 부여가 일반적 주체 범위가 아닌 특정 단체(구기종목 3개구 지회)에 집중되어 있는 등 ‘공정기준에 특혜 소지가 있다’고 검토되며 취지적 관점과 운영적 관점에 있어서도 불합리한 조례개정 요구라고 판단됨.
- 검토결과, 개정 요구의 건은 공공체육시설 설치·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고려 시 ‘일반시민이 공정한 시설 이용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으로 조례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요구됨.

관계 법령 발췌서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체육 활동에 필요한 체육시설의 적정한 설치·운영과 체육시설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절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체육시설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 및 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자는 해당 체육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체육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이 제1호에 따른 행사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행사 또는 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일부를 감경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다음 각 목의 단체(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
 - 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통합체육회
 - 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에 따른 대한장애인체육회
 - 다. 삭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행사
4. 65세 이상의 사람,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위한 행사
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6.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7. 그 밖에 사용료 감경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행사 또는 활동

□ 생활체육진흥법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체육 진흥 시책과 권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국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14조(선수 등의 육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와 체육지도자에 대하여 필요한 육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4.>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지역 체육대회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지역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④ 지방체육회 중 시·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군·구체육회는 시·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⑤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도 및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 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